

#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보조비 지급규정

제정 2005. 8.10. 제456호

개정 2010. 3. 5. 제514호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 및 조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(이하 "연구보조비"라 한다)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과 조교에게 적용한다.

## 제2장 연구 보조비 지급 심의위원회

제3조(설치)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구성) 심의위원회 구성은 본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 의한다.

제5조(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
2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
3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
4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
5.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소집 및 의결) 위원장은 총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## 제3장 연구 보조비

제7조(연구보조비) ①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(이하 "성과급"이라 한다)과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 연구보조비(이하 "시간강사 연구보조비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②연구보조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

지급한다.

제8조(지급) ①성과급은 직전학년도의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 실적의 점수를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며, 조교는 당해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.

②성과급 지급비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시간강사 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,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연구비사용) 연구보조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 보조금교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보조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## 제4장 업무실적의 평가 등

제10조(실적의 평가) ①성과급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당해년도 3월말까지 직전학년도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, 조교는 당해년도 12월까지의 근무실적을 평가받는다.

②전임교원의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의 평가방법은 본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며, 조교의 근무실적은 조교임용규정의 근무실적 평가방법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지침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05. 8.10. 제45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3. 5. 제514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